



EUROPEAN
COMMISSION

브뤼셀, XXX
[...] (2024) XXX

폐배터리 재활용 효율 및 물질 회수율 산정 및 검증 방법론 및 문서 양식 수립을 통해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2023/1542를 보완하는

X년 X월 X일자

집행위원회 위임규정 (EU) .../...

(EEA 관련 문서)

본 규정안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채택하거나 승인하지 않았다. 제시된 모든 견해는 집행위원회 서비스의 예비 견해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집행위원회의 공식 입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제안 이유서

1. 위임 법률의 맥락

배터리는 지속 가능한 개발, 그린 모빌리티, 클린 에너지 및 기후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이다. 배터리 및 폐배터리 규정¹ (이하 '이 규정')은 유럽연합에서 시장에 출시되는 배터리의 전체 수명 주기를 포괄하는 통일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한다. 또한 이 규정은 폐배터리에서의 재활용 효율 및 물질 회수에 대한 요구 사항도 포함한다.

위원회는 부속서 XII에 명시된 대로 재활용 효율성 및 물질 회수율을 산정하고 검증하기 위한 방법론과 문서화 형식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 규정의 부속서 XII는 폐배터리의 보관 및 처리 요건과 재활용 효율성 및 물질 회수 목표를 다룬다.

2. 법률 채택 전 협의

이것은 기술적 법률이므로 영향 평가나 공개 공청회가 필요하지 않다.

위임법률은 위원회의 공동연구 센터(JRC)가 작성한 '폐배터리 재활용 효율성 및 물질 회수율 산정 및 검증 규칙에 대한 JRC 기술 제안'이라는 제목의 초안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다. 이해 관계자들은 4개의 워크숍을 포함하여 이 보고서 작성에 기여했다. 각 회원국이 지정한 전문가와 기업 조직 및 시민 사회를 대표하는 다른 선정된 전문가로 구성된 폐기물 전문가 그룹은 2024년 3월 21일에 위임법률 초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 위임법률 초안은 대중의 피드백을 받기 위해 2024년 [...]일부터 [...]일까지 규제개선포털에 게시되었다. 위임법률 초안은 피드백을 위해 2024년 [...]일부터 [...]일까지 WTO/TBT에 제출되었다.

3. 위임법률의 법적 요소

이 위임법률은 해당 규정 제71조 제4항에 따라 채택된다. 이 조항은 위원회가 부속서 XII의 A부에 명시된 대로 재활용 효율 및 물질 회수율 산정 및 검증 방법론과 문서화 형식을 수립하는 위임법률을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1 지침 2008/98/EC 및 규정(EU) 2019/1020를 개정하고 지침 2006/66/EC 폐지하는, 배터리 및 폐배터리에 관한 2023년 7월 12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23/1542 (OJ L 191, 2023. 7. 28, p. 1.).

폐배터리 재활용 효율 및 물질 회수율 산정 및 검증 방법론 및 문서 양식 수립을 통해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2023/1542을 보완하는

X년 X월 X일자

집행위원회 위임규정 (EU) .../...

(EEA 관련 문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을 고려하고,

지침 2008/98/EC 및 규정(EU) 2019/1020을 개정하고 및 지침 2006/66/EC² 폐지하며, 배터리 및 폐배터리에 관한 2023년 7월 12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23/1542 특히 그 제71조(4)항을 고려하여,

전문:

- (1) 규정(EU) 2023/1542는 재활용업체가 폐배터리 재활용 효율 및 물질 회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요건을 명시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요구 사항에 따라 폐배터리에서 재활용 효율과 물질 회수율을 산정하고 검증하는 방법론과 문서화 형식을 작성해야 한다. 이는 폐배터리 관리를 포함하여 EU 시장에 출시되는 배터리의 전체 수명 주기를 포괄하는 통일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
- (2) 이 방법론은 배터리 산업을 위해 고품질의 물질 회수를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해당 방법론은 경쟁을 왜곡하거나 폐배터리에서 나온 2차 원자재에 대한 역내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빠르게 확장되고 발전하는 시장에서 연구와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 배터리 재활용 및 회수 프로세스에서의 기술적 발전과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고, 기존 및 새로운 배터리 화학물질을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6/66/EC³에 따라 수립된 방법론을 고려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축해야 한다.
- (3) 재활용 효율 산정 및 검증 방법론은 달성된 재활용 효율에 대한 통일된 산정을 보장하기 위해 재활용 효율 목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입 및 산출 분율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 (4) 달성된 물질 회수에 대한 통일된 산정을 보장하기 위해 물질 회수율 산정 및 검증 방법론에는 물질 회수 목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입물 및 산출물 분율과 회수된 물질의 품질에 대한 추가 요구 사항이 자세히 설명되어야 한다.

2 OJ L 191, 2023. 7. 28, p. 1, ELI: <http://data.europa.eu/eli/reg/2023/1542/oj>.

3 지침 91/157/EEC 폐지하며, 배터리 및 축전지와 폐배터리 및 폐축전지에 관한 2006년 9월 6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6/66/EC (OJ L 266, 2006. 9. 26, p. 1, ELI: <http://data.europa.eu/eli/dir/2006/66/oj>).

- (5) 추적 가능성을 보장하고 산정 규칙의 공정한 적용을 보장하며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정(EU) 2023/1542 부속서 XII의 A부 (5) 및 (6)항에 포함된 물질에 대한 문서 형식에는 배터리 재활용 프로세스에서 물질이 식별 가능한 흐름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문서화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6) 자료의 일관성 및 균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폐배터리 재활용 효율 및 물질 회수율 산정을 위한 서류 작성 시 사용하는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 (7) 재활용 효율 및 물질 회수율에 대한 문서화 형식은 데이터가 다양한 배터리 화학물질에 관련되고 구체적임을 보장하기 위해 납산 배터리, 리튬 기반 배터리, 니켈-카드뮴 배터리 및 기타 배터리에 대해 별도로 작성되어야 한다.
- (8) 일관되고 통일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 재활용 효율 및 물질 회수율 검증 방법론은 최소한 검증 범위와 적용할 검증 기법을 명시해야 한다.

본 규정을 채택한다.

제1조

폐배터리의 재활용 효율 및 물질 회수율 산정 및 검증 방법론, 그리고 폐배터리의 재활용 효율 및 물질 회수에 대한 문서 형식과 최종 산출물의 목적지 및 수율에 관한 내용은 부속서에 명시되어 있다.

제2조

본 규정은 *유럽연합* 관보 고시일로부터 20일째에 발효된다.

본 규정은 그 전체가 구속력이 있으며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된다.

브뤼셀에서 제정함.

집행위원회

의장